

3. 공적연금제도의 개선방향

가. 연금개혁의 전제조건

- 전술하였듯이,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재정불균형, 소득과악한계 등으로 인해 심각한 구조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음.
 - 따라서 이로 인해 최근 계속 커지고 있는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속한 연금개혁이 불가피함.

- 연금개혁의 방법에 있어 급여 및 보험료수준, 재정운영방식과 재원조달형태, 연금구조 및 소득재분배 기능, 공-사연금 간 역할 분담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선택과 조합이 가능함.
 - 실제로 선진국들의 공적연금은 나라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각국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 및 정치적 이념의 전환 등에 따라 연금의 형태 및 역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에 들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가 각 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가 공통된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 그렇지만 이러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형태도 국가별로 상이함.
 -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급여수준의 인하 및 보험료 인상, 연금개시연령의 연기 등 수량적인 개혁과 함께 적립방식에 있어 민간연금의 역할을 제고하는 점진적인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반면, 칠레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의 민간연금으로 전환하는 등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기도 하였음.

-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개혁에 있어서도 이러한 수량적인 개혁과 구조적인 개혁방안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제 2차 국민연금개혁은 기존의 일원적 연금구조 및 부분적립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급여 및 보험료수준을 조정하는 수량적 개혁의 형

태를 취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는 연금재정의 불안정 및 그로 인한 국민적 신뢰상실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개혁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 노년층 및 영세가입자들의 연금사각지대 문제 및 자영자 소득과약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능력의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과방식의 전 국민 기초연금제의 도입 및 완전적립식의 소득비례연금으로의 이원화, 급여수준의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구조개혁안은 상대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즉 개혁에 따른 일시적인 충격 및 초기재정부담의 증가가 있더라도 더 늦기 전에 연금 재정상의 문제와 함께 사각지대 및 소득과약의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음.
- 이러한 수량적 개혁방안이나 구조적 개혁방안 모두 각기 나름대로의 합리성 및 장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논의 및 방안의 선택에 앞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입각하여 개혁방안을 모색하고 각 대안들을 비교·평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세대 간 형평성 (Inter-generational Equity)>

□ 현행 연금제도는 제도도입의 초기세대들에게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수준으로 커다란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하지만 이와 같이 국민연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술하였듯이 2040년 무렵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 그 이후에는 매년 연금급여를 당해연도의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납부해야 할 보험료수준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됨.
- 예를 들어 2050년에는 소득의 30.0%, 2060년에는 36.6%, 2070년에는 39.1%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 즉 차후 동일한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현세대가 내고 있는 보험료의 4배 이상을

부담해야만 하는 것임.

○ 만일 연금개혁이 늦추어지면 질수록 다음 세대의 부담은 비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연금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세대이기주의가 아닌 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국민연금의 급여혜택 및 보험료부담을 세대 간에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이러한 개혁을 서두르는 것이 후세대로의 추가적인 부담전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임.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 이미 수차례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급속한 인구구조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음.

○ 인구구조 고령화는 거시경제를 비롯하여 노동시장, 금융시장 및 국가재정 등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됨.

○ 특히 향후 2020년 이후부터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상대적 축소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할 요인으로 사료됨.

□ 따라서 연금개혁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논의대상은 국민연금의 재정운영방식의 결정문제일 것임.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구조적 불균형과 인구고령화로 인해 부분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임.

○ 그렇지만 많은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부과방식은 고령화사회에 적합지 않는 제도이며,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나 연금급여의 대폭적 삭감이 불가피하게 됨.

○ 반면 적립방식의 연금제도는 비록 금융시장이나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의해 영

향을 받지만 인구구조의 변화에는 그리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음.

- 따라서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고령화 단계에서는 적립방식이 부과방식에 비해 지속가능성 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의 부분적인 적립방식의 도입 혹은 적립식 민간연금의 역할제고 등을 통해 부과방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므로 향후 연금개혁방향의 논의에 있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부과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부분적립방식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어야 할 것임.

<계층 간 소득재분배>

-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균등부문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계층 간 또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렇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의 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90%를 상회하게 되는 반면, 중위소득의 두 배 이상 소득자의 대체율은 45% 이하가 됨.
 - 실제로 소득상한제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더 낮아지게 되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소득계층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게 되며, 빈곤층으로 갈수록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됨.
- 이러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빈곤노인층의 최소노후생계보장이라는 사회적 명제 하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나 연금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이 생존기간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험의 제공에 있음을 고려할 때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것임.
 - 또한 소득재분배의 정책목표가 빈곤노인층의 최소생계보장에 있을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정책수단과의 역할조정 및 상대적인 정책효과성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아울러 경제학적 관점에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민간연금이나 직역연금제도와 같이 지불한 것에 비례하여 연금급여를 수령할 경우 가입자들은 연금제도를 일종의 저축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반면에 100% 소득재분배 기능을 위해 지불한 것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급여를 수령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단순한 소득세로 간주할 것임.
- 그리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는 노동공급 및 은퇴시기결정 등에 영향을 미쳐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효율성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비용을 수반함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

<국민연금의 적정성>

- 1998년의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40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소득의 60% 수준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국민연금급여 및 보험료의 적정수준은 기업과 개인 차원의 노후소득보장과 반드시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고령화사회에 보다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가, 기업, 개인의 적정한 역할 및 기능을 제시한 후 이에 입각하여 국민연금의 급여·보험료수준이 결정되어야 할 것임.

나.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개혁

- 전술한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을 토대로 국민연금제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아래에 열거하고 설명하기로 함.

<구조적인 불균형의 개선>

- 1998년의 1차 연금법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 2차 연금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5년 12월 현재 개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
- 제출된 국민연금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 4-9>에 나와 있듯이 장기 재정안정화방안, 급여제도 합리화, 제도 내실화 방안 및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음.

□ 위 개정안 내용 중에서 이해집단 간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문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임.

○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p씩 인상하여 2030년에는 15.9%로 고정하고, 급여수준을 40년 동안 가입한 평균적인 소득자를 기준으로 현행 60%에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인하하되, 기존가입자의 연금액과 기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명시하고 있음.

<표 4-9> 제 2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

주요 개정내용		현행 제도	개정(안)
장기재정안정화 방안	보험료율	평균소득월액의 9%	- 2010년부터 5년마다 1.38% p 상승 - 2030년 15.90%까지
	소득대체율	60%	- 2004~2007: 55% - 2008년: 50% * 기존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존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 적용
급여제도의 합리화 및 제도내실화 방안	연금지급정지제도	64세까지 소득활동에 종사하면 연금지급정지	60~64세에 소득활동 종사시 연금감액만 적용
	조기노령연금	조기수급 1년당 감액률 5%	조기수급 1년당 감액률 6%
	감액노령연금	10~20년 미만 가입자 2.5% 추가감액을 적용	10~20년 미만 가입자 2.5% 추가감액을 폐지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비상설	독립적 상설위원회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폐지

□ 또한 연금사각지대의 최소화 및 가입자 집단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내실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즉 납부예외자를 출산, 병역, 학업 등 추후 납부 가능 사유가 객관적인 경우로 제한하여 축소하고 보호소 수감, 주소불명 등 납부예외자로 관리해도 실익이 없거나 관리가 곤란한 자는 적용 제외시키도록 하였음.

○ 각 지사 간 경쟁체제의 확대, 불신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시켜 연금사각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 급여합리화 방안으로는 급여 간 형평성 및 급여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10~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한 2.5%p 추가 감액하는 감액노령연금을 폐지하여 최소 가입기간 10년이라는 설정 취지에 부합한 급여 설정을 도모하였음.

- 또한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재가입으로 가입기간이 증가한 경우 지급률을 상향조정하고 60세 이후 재직자에게 노령연금을 적용하여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하였음.
- 아울러 미완치 장애 및 질병 발생 시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하여 조기 소득보장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또한 유족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반환일시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의 하향조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수급에 대한 반유인요소를 강화하여 연금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하여,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계획수립,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

□ 이러한 국민연금개혁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세대 간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 등을 비롯한 많은 현세대 이해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있음.

- 또한 국회심의과정에서 현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번 연금법개정 역시 지난 1998년의 개혁사례와 같이 연금재정안정화의 실패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소득파악률의 개선>

□ 현재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등이 각기 나름대로의 소득조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연계가 없어 조사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행정비효율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세청을 중심으로 소득조사 및 징수 등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 영국 및 스웨덴의 경우 자영자의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이 맡고 있으며, 또한 이

를 계기로 국세청의 소득포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세정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즉 사업소득세의 과표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조장하는 특례제도를 축소하고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며, 기장의무화 및 전자기장의 도입 등의 대책이 필요함.

다. 직역연금제도의 개선

□ 전술하였듯이 우리나라의 직역연금제도는 각출주의에 입각한 적립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각출·급여상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이러한 직역연금의 운영방침을 장기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군인연금의 장기적 재정자립도는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1/3 수준밖에 되지 않아 각출료가 급여혜택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임.
- 따라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중앙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실정임.

□ 2000년 법 개정으로 인해 공무원연금제도는 획기적인 재정운영여건상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향후 공무원연금재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중·장기운영전략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즉 2000년 법 개정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부보전방식의 타당성이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분석과 재정여건변화에 대응한 재정방식 및 기금역할의 재정립 등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향후 강구될 대책은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심층적인 고려를 토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첫째, 현재와 같이 매년 연금수지상의 적자발생분을 보전하는 부과식 지원형태를 유지할 경우 향후 그 지원규모가 재정부담능력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이러한 정부부담규모를 시기적으로 보다 균등하게 배분하여 재정의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부과방식적인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무원연금재정기금을 활용한 부분적립식 형태로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부분적립식 재정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매년 최소기금적립액은 신규임용공무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보험료와 과거에 누적된 미적립 연금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의 합계가 될 것임. 추후 총보험료수준을 표준보험료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향후 약 30년간은 연금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기금이 소진되어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임. 반면 이에 더하여 정부가 미적립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기금에 추가로 적립해 나갈 경우 향후 70년간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 초기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재원조달대책을 강구해야 함.
- 마지막으로 현행 공무원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제도와 민간의 퇴직일시금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험료의 적정부담원칙은 이러한 공무원연금의 기능과 연계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임.
- 즉 기초연금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공무원 간의 보험료 균등분담원칙을 고수하고, 퇴직급여적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필요비용을 조달하여 민간부문과 형평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임.

□ 전술한 부분에 대한 고려와 함께, 향후 급여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무원연금의 구조개선 노력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급여-보험료 수준간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재원확충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자립도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조달노력과 함께 제도합리화 및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일원화된 공무원연금제도를 미국, 일본 등의 공무원연금 개혁사례처럼 다층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1차적 노후생계보장을 국민연금제도로 일원화하고, 공무원연금은 미국의 기업연금처럼 2차적 사회보장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임.

라. 공·사연금제도 간 연계방안의 강구

- 국가, 기업, 개인을 축으로 한 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연금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임.
 - 즉 현행의 퇴직일시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해나가는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효율적 연계를 통해 적절한 다층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 즉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의 유기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보장체계의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하에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공·사연금제도간 연계방안을 소개하기로 함.

<독립형의 기업연금제도>

- 기업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이 독립적인 형태로 도입하는 방안임.
 - 즉,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 plan)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적격연금의 자격에는 사외적립형의 완전적립방식운영과 함께 급부수준, 지급능력, 지급보장 등의 요건을 포함함.
- 이러한 독립적 형태의 기업연금제도는 현행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형태임.
 - 그렇지만 기업연금제도를 독립적으로 도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합한 총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높아질 것이 우려됨.
 - 또한 현재 기업주의 국민연금 및 퇴직금에 대한 기여율은 총임금의 최소 12.8%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추후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에 따라 그 부담도 20% 이상까지 늘어나게 되어 이와 같은 지나친 기업주의 사회보장부담은 고용비용증대를 통해 고용회피의 유인을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비용증대에 의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
 - 아울러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의 제공만으로는 기업으로 하여금 퇴직금을 기

업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충분한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것임.

- 특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전액 적립하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내유보를 통해 경상경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1992년 KDI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기업의 평균퇴직급여충당금은 누적퇴직금의 80% 수준이며, 이 중 전액 사외 적립하는 기업은 8%에 불과한 실정임.
- 또한 사외적립의 경우에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관행화되어 있음.
-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의 도입 시 보험료의 적립을 위해서는 기업주의 실질적인 추가부담이 요구되므로, 세제혜택만으로는 이러한 부담증가를 경감하는 데 효과가 미미할 것임.
- 그러므로 현행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 이외의 추가적인 유인수단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적용제외방식의 기업연금제도>

-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과 기업연금 간의 적용제외제도(Contracting-out)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의미함.
 - 즉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에 해당하는 급여수준 또는 보험료수준 이상을 제공하는 적격기업연금제도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소득비례부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면제시켜주는 방식임.
 - 이러한 적용제외제도는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의 중복급여 및 중복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 및 영국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음.
- 적용제외형 기업연금도입방안은 소득대체수준 및 보험료수준의 적정성 · 효율성 측면에서 독립형 기업연금에 비해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평가됨.
 -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과 기업연금에 중복 가입함으로써 급여수준이 불필요하게 과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주 및 피용자의 과다한 보험료 납부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게 되어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왜곡효과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임.

- 또한 이러한 적용제외방식은 기업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 제공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퇴직일시금을 적격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의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므로, 기업주의 총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됨.
- 따라서 사외적립형 기업연금도입에 따른 기업주의 추가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연금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마. 연금기금의 민간위탁 활성화

-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기금의 규모는 2003년 말 현재 약 130조원이며 당분간 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규모는 2000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010년 약 240조원, 2020년 초에는 500조원, 2030년에는 약 65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연금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는가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연금제도의 재정건전성 유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의 발전 및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 향후 이러한 대규모의 기금을 정부가 독점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가능하지도 않을 것임.
- 기금운용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직접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대책은 계약제를 통해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하여 분산 관리하는 방안일 것임.
 - 즉 이 방안은 공적연금의 가입자 관리·징수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는 정부가 관장하되,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운용하는 연금기금의 일부를 민간투자기관에 위탁운용토록 하는 방안임.
 - 이렇듯 연금기금을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되면,
 - 첫째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운용을 경쟁적 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정부-민간 간 혹은 민간금융기관 간 경쟁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

성의 제고를 도모할 수 있으며,

- 둘째, 민간투자기관으로 하여금 연금기금을 직접 관리 • 운용토록 함으로써 주식 • 채권시장 등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 특히 향후 급속히 증가할 국민연금의 기금적립금을 정부가 전담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 분산관리가 불가피해질 것이므로 기금운용에 대한 노하우 축적을 위한 사전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이 방안의 실행을 통해 기금투자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투자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연금기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국민의 신뢰감 회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첫째, 향후 주식 등 위험자산투자를 비롯한 연금기금의 민간위탁투자규모를 보다 과감히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임.
 - 연금기금을 민간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연금기금의 특성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운영자산과는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것임.
 - 또한 이처럼 분리된 계정하에서도 자산 구성상 충분한 위험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탁규모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실적이 우수한 대형 민간투자회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위탁규모를 어느 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민간위탁관리의 기본 목적 중의 하나는 민-관, 민-민 간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기금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음. 따라서 선정된 투자회사의 자산 운영과정에 대하여는 불필요한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후실적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물론 기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사전규제 및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나,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한 자산운용에 대한 통제위주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통계”, 각년도.
-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 2003. 6. 국방부, 인터넷 자료, 2001.
- 김용하·석재은·윤석원, “국민연금제도 개선: 전국민연금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 한국사회보장문제연구소, 1997.
- 김용하 외,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계산 및 재정안정화 방안”, 사학연금관리공단, 1999.
- 문형표,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 목표*, 연구보고서 2002-07, 한국개발연구원, 2002.
- _____, “공적연금의 재정적 고찰 및 개선과제”, *1999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0.
- 문형표·김용하, “인구고령화와 저축: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04.
- 사학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통계연보*, 각년도.
- 석재은·김용하, *공적연금의 소득보장효과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선우덕·정경희·오영희·조애저·석재은,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장기요양병상 및 전문병상 적정 공급방안 연구” 2001.
- Aschauer, D., "Is Government Spending Productive?"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No. 23, 1989, pp. 177-200.
- Baffes, Jone and Anwar Shah, "Productivity of Public Spending, Sectoral Allocation Choices, and Economic Growth,"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1178, The World Bank, 1993.
- Barro, Robert J. and Xavier Sala-i-Martin, "Public Finance in Models of Economic Growth,"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59, No. 4, 1992, pp. 645-661.
- Colin Gillion, "The Development and Reform of Social Security Pension: The Approach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Review, vol. 53, Jan. 2000, pp. 35–64.

Feldstein, Martin,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2, No. 5, September/October 1974, pp. 505–927.

Feldstein, M. and A. Samwick, "Social Security Rules and Marginal Tax Rates," *National Tax Journal* 45, 1992, pp. 1–22.